

제 호

##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주소:
- 성명(대표자명): (생년월일: )
- 법인명(단체명):
- 지정조건: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성평등가족부장관

직인